

教授福祉의 실태와 개선 방향

尹 鍾 健

(韓國外國語大 教育行政學)

최적의 福祉狀態에서는 개인은 저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教授들은 시설·환경면, 경제적인 면에서 理想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人1研究室의 확보, 身分保障, 適正報酬體系의 확립 등이 先決課題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 教授福祉의 概念

福祉란 ‘安定된 生活’이라든가 ‘生活欲求의 充足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illfare에 대치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는 well-being의 상태 또는 조건의 同義語로서 사용되어 왔다.¹⁾ 우리나라의 경우는 흔히 ‘福’ 또는 ‘幸福’이란 개념과 통용되며, 영어로는 ‘welfare’이고, ‘福祉·厚生’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福祉 상태라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모든 욕구가 충족되며, 즐겁고 보람찬 나날을 누리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러한 권리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3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社會保障’은 ‘社會福祉’와 同義語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현대의 經營·組織理論에서는 조직 속에서의 組織員들이 福祉는 조직의 生産性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에서가 아니라, 人本主義의 人間尊嚴性의 차원에서 당연히 힘써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職場人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즐겁고 보람된 職場生活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大學教授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大學이라는 組織, 즉 職場에서의 構成

1) 李啓卓, 福祉行政論, 서울: 고려원, 1983, p.11.

員인 敎授들도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누릴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그리고 ‘즐겁고 보람된 생활’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組織에서의 福祉厚生은 法定 福祉厚生領域과 法定外 福祉厚生領域으로 구분된다. 法定 福祉領域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社會保障制度和 연계된 각종 保險制度의 실시를 말한다.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① 질병에 대비한 醫療保險, ② 노령에 대비한 年金保險, ③ 재해에 대비한 災害保險, ④ 실업에 대비한 失業保險 등을 法定 福祉厚生領域에 포함시키고 있다.²⁾

法定外 福祉厚生領域에 속하는 것은 組織이 自律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姜錫仁은 다음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³⁾

· 生活施設

- ① 住宅施設—社宅, 寄宿舍, 전세집 또는 전세방의 알선 등
- ② 給食施設—食堂, 食料品の 배합 등
- ③ 기타—생활상당소, 피복 대여, 침구 대여 등

· 經濟施設

- ① 購買施設—매점, 배급소, 소비조합, 쿠폰제도, 각종 수리 시설 등
- ② 金融施設—주택대금, 廢用關係貸金, 자녀육영대금, 불행구제대금 등의 貸金制度 및 預·貯金制度
- ③ 共濟制度—廢用關係給付金, 災害慰撫金 등
- ④ 기타—결혼식장 등의 시설, 내직 알선 등

· 保健衛生施設

- ① 診療施設—의무실, 진료실, 병원, 요양소 등
- ② 保養施設—보양소, 해변휴양소, 산간휴양소 등
- ③ 保健施設—목욕, 이발소, 미용실, 방역, 냉난방, 환기, 환경위생 등

· 文化·體育·娛樂施設

- ① 文化施設—학교, 도서관, 강연회, 강습회 등
- ② 體育施設—체육관, 운동장, 풀장 등
- ③ 慰安·娛樂施設—오락실, 클럽하우스, 영화, 연극, 야유회 등

대학에서의 敎授福祉를 논함에 있어서는 주로 法定外의 經濟的 측면과 施設環境的 측면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敎授活動과 研究活動의 自律性 保障과 支援體制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敎授福祉 實態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의 敎授福祉 현황은 어떠한가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만한 문헌을 찾기 어려웠고, 大學敎育協議會에서 실시한 大學機關 評價報告書(1985)에도 通勤 버스 현황, 敎職員 식당 사정, 住宅融資惠澤率, 自家住宅者率, 敎授會館의 시설 현황 등 겨우 5개 영역에 걸쳐 피상적인 統計資料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 간단한 設問紙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 設問紙도 敎授福祉 현황을 완벽하고 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다만 이 글을 쓰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자 나름대로 영역을 분류하여 제작한 것이다.

設問內容은 福祉現況에 관련된 것이 16 문항, 職務滿足度에 관한 것이 12 문항, 敎授勤務實態에 관한 것이 10 문항이었다.

設問紙는 전국의 專門大學, 單科大學, 綜合大學의 學生生活研究所長 앞으로 발송되었으며 총 220 부 중 회수된 120 부가 분석되었다. 이하에 設問 分析 結果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 敎授의 福祉現況을 拔萃하여 소개함으로써 교수 복지 실태의 대강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崔鍾泰, 現代人事管理論, 서울: 博英社, 1981, p.189.

3) 姜錫仁, 勞務管理, 서울: 進明文化社, 1975, pp.216~225, 崔鍾泰의 上掲書 p.196 에서 再引用.

1) 施設・環境面

시설·환경면에서는 교수회관 유무와 교수 휴양 시설 유무, 敎授研究室 확보 상태, 校內 시설물 활용의 便宜性, 敎具·敎材·資料 활용의 편의성 등이 大學 種別 및 設立別로 분석되었다. 이를 각각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에서 <표 10>까지와 같다.

<표 1> 교수회관이 있는 대학수(유형별)

*p<.05

종 류	조사 대상 학교수(A)	있는 학교 수(B)	% (B/A)	χ ²
종합대학	23	7	30.4	8.59*
단과대학	33	2	6.1	
전문대학	64	6	9.4	
계	120	15	12.5	

<표 2> 교수회관이 있는 대학수(설립별)

*p<.05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있는 학교 수(B)	% (B/A)	χ ²
국 립	34	5	14.7	7.34*
사 립	84	9	10.7	

<표 3> 교수 휴양 시설이 있는 학교수(유형별)

**p<.01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있는 학교 수(B)	% (B/A)	χ ²
종합대학	23	10	43.5	13.32**
단과대학	33	4	12.1	
전문대학	64	7	10.9	
계	120	21	17.5	

<표 7> 교내 시설물 활용의 편의성(유형별)

종류별	매우 불편	불 편 단	보 통	만 족	매우 만족	χ ²
종합대학	0	4(17.4)	11(47.8)	5(21.7)	3(13.0)	10.95
단과대학	0	6(18.2)	19(57.6)	6(18.2)	2(6.1)	
전문대학	3(4.7)	10(15.6)	34(53.1)	17(26.6)	0	
계	3(2.5)	20(16.7)	64(53.3)	28(23.3)	5(4.2)	

()안은 %

<표 1>에서 <표 10>까지에 나타난 敎授福祉 시설 현황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다. 가장 필수적인 敎授研究室마저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대학이 66%에 불과하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53%에 불과한 실정인 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敎授會館이 있는 대학 수가 전체의 13%, 敎授休養施設이 있는 대학 수가 전체의 17%인 점

<표 4> 교수 휴양 시설이 있는 학교수(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있는 학교 수(B)	% (B/A)	χ ²
국 립	34	7	20.6	0.47
사 립	84	14	16.7	

<표 5> 교수연구실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유형별)

종류별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χ ²
종합대학	16(69.6)	7(30.4)	0	12.909
단과대학	29(87.9)	4(12.1)	0	
전문대학	34(53.1)	27(42.2)	3(4.7)	
계	79(65.8)	38(31.7)	3(2.5)	

()안은 %

<표 6> 교수연구실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설립별)

설립별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χ ²
국 립	27(79.4)	7(20.6)	0	5.233
사 립	50(59.5)	31(36.9)	3(3.6)	

()안은 %

〈표 8〉 교내 시설물 활용의 편의성(설립별)

설립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
국립	1(2.9)	3(8.8)	19(55.9)	9(26.5)	2(5.9)	5.81
사립	2(2.4)	17(20.2)	44(52.4)	18(21.4)	3(3.6)	

()안은 %

〈표 9〉 교구·교재·자료 활용의 편의성(유형별)

종류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
종합대학	0	8(36.4)	6(27.3)	6(27.3)	2(9.1)	8.99
단과대학	1(3.0)	11(33.3)	11(33.3)	7(21.2)	3(9.1)	
전문대학	4(6.3)	14(21.9)	30(46.9)	15(23.4)	1(1.6)	
계	5(4.2)	33(27.7)	47(39.5)	28(23.5)	6(5.0)	

()안은 %

〈표 10〉 교구·교재·자료활용의 편의성(설립별)

설립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
국립	1(2.9)	9(26.5)	14(41.2)	7(20.6)	3(8.8)	4.95
사립	4(4.8)	24(28.9)	32(38.6)	20(24.1)	3(3.6)	

()안은 %

은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教具·教材·資料 활용의 便宜性에 대한 不滿도 32%에 이르고 있음은 그것이 곧 教授活動이나 研究活動에 阻礙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2) 經濟面

경제면에서의 教授福祉 현황은 報酬, 子女學資金支援, 住宅資金貸與, 海外留學補助, 國內學位取得時補助, 研究補助費支援, 컴퓨터活用酬價免除 또는 減免 등에 관한 것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에서 〈표 25〉까지와 같다.

〈표 11〉에서 〈표 25〉까지의 결과를 보면, 먼저 報酬에 대한 만족도는 예상외로 높은(?)편 ('보통' 이상으로 반응한 비율이 전체의 80%)이었다. 子女學資金補助實態를 보면, 初·中·高에 다니거나 자신이 在職中인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은 78% 이상의 대학에서 全額 또는 半額補助를 해주고 있으나, 他大學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78% 이상의 대학이 전혀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私立大學이 더 심하다.

한편 教授用住宅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표 11〉 보수에 대한 만족도(유형별)

종류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
종합대학	0	3(13.0)	12(52.2)	5(21.7)	3(13.0)	12.69
단과대학	0	8(24.2)	16(48.5)	9(27.3)	0	
전문대학	3(4.7)	9(14.1)	34(53.1)	17(26.6)	1(1.6)	
계	3(2.5)	20(16.7)	62(51.7)	31(25.8)	4(3.3)	

()안은 %

〈표 12〉 보수에 대한 만족도(설립별)

설립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2
국립	0	4(11.8)	22(64.7)	7(20.6)	1(2.9)	6.89
사립	3(3.6)	16(19.0)	39(46.4)	23(27.4)	3(3.6)	

()안은 %

〈표 13〉 자녀학자금 보조 실태

대상구분	보조 방법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계	국립	사립
초·중·고 대학	보조 없음	6(26.1)	8(24.2)	11(17.2)	25(20.8)	6(17.6)	18(21.4)
	일부 보조	0	0	1(1.6)	1(0.8)	0	1(1.2)
	반액 보조	3(13.0)	8(24.2)	13(20.3)	24(20.0)	4(11.8)	20(23.8)
	전액 보조	14(60.9)	17(51.5)	39(60.9)	70(58.3)	24(70.6)	45(53.6)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재학	보조 없음	0	4(12.1)	21(32.8)	25(20.8)	6(17.6)	19(22.6)
	일부 보조	0	0	1(1.6)	1(0.8)	0	1(1.2)
	반액 보조	5(21.7)	7(21.2)	19(29.7)	31(25.8)	8(23.5)	23(27.4)
	전액 보조	18(78.3)	22(66.7)	23(35.9)	63(52.5)	20(58.8)	41(48.8)
타대학 재학	보조 없음	19(82.6)	26(78.8)	49(76.6)	94(78.3)	23(67.6)	69(82.1)
	일부 보조	2(8.7)	2(6.1)	9(14.1)	13(10.8)	9(26.5)	4(4.8)
	반액 보조	2(8.7)	4(12.1)	5(7.8)	11(9.2)	2(5.9)	9(10.7)
	전액 보조	0	1(3.0)	1(1.6)	2(1.7)	0	2(2.4)

()안은 %

〈표 14〉 교수용 주택 임대(유상 또는 무상) 혜택
있음(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4	17.4	2.76
단과대학	33	6	18.2	
전문대학	64	5	7.8	
계	120	15	12.5	

〈표 16〉 생활 주택 자금 대여 또는 주택 조합 결
성 지원 혜택 있음(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2	8.7	4.04
단과대학	33	9	27.3	
전문대학	64	9	14.1	
계	120	20	16.7	

〈표 15〉 교수용 주택 임대(유상 또는 무상) 혜택
있음(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학교 수(B)	%(B/A)	χ^2
국립	34	7	20.6	2.84
사립	84	8	9.5	

〈표 17〉 생활 주택 자금 대여 또는 주택 조합 결
성 지원 혜택(설립별) ***p<.001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학교 수(B)	%(B/A)	χ^2
국립	34	12	35.3	17.57***
사립	84	7	8.3	

〈표 18〉 해외유학시 보조 있음(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7	30.4	1.61
단과대학	33	10	30.3	
전문대학	64	13	20.3	
계	120	30	25.0	

〈표 19〉 해외유학시 보조 있음(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국립	34	7	20.6	0.93
사립	84	23	27.4	

〈표 20〉 국내 학위과정 등록시 보조 있음(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3	13.0	1.42
단과대학	33	4	12.1	
전문대학	64	4	6.3	
계	120	11	9.2	

〈표 21〉 국내 학위과정 등록시 보조 있음(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국립	34	1	2.9	2.42
사립	84	10	11.9	

〈표 22〉 연구보조비 지원 제도(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18	78.3	4.03
단과대학	33	19	57.6	
전문대학	64	35	54.7	
계	120	72	60.0	

〈표 23〉 연구보조비 지원 제도(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국립	34	22	64.7	1.07
사립	84	49	58.3	

〈표 24〉 컴퓨터 활용 수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있음(유형별)

* $p < .05$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종합대학	23	9	39.1	6.45*
단과대학	33	7	21.2	
전문대학	64	9	14.1	
계	120	25	20.8	

〈표 25〉 컴퓨터 활용 수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있음(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혜택 학교 수(B)	%(B/A)	χ^2
국립	34	8	23.5	0.43
사립	84	17	20.2	

매우 낮으며,學位取得을 위한補助惠澤은 海外留學과 國內進學間에 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해외유학시는 25%의 大學이 補助를 해주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9%만 보조 혜택을 주고 있다.

研究補助費 支援制度는 60% 이상의 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나, 研究에 필요한 컴퓨터 活用酬價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21%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3) 기타

이 밖에 敎授들의 한결같은 소망의 하나인 安息年 制度和 없어서는 안 될 通勤 버스 운행 그리고 편의 시설의 하나인 生活必需品 共同購販場 運營 등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福祉 實態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의 敎授들의 職務滿足度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6〉에서 〈표 33〉까지와 같다.

〈표 26〉에서 〈표 33〉까지의 결과를 보면, 安息年 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大學이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國立大가 私立大보다 못하고, 綜合大가 單科大보다 實施率이 낮은 부끄러운 일이다.

生必需品 共同購販場은 규모가 작은 專門大나

〈표 26〉 안식년 제도 있음(유형별)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안식년 실시 학교수(B)	%(B/A)	χ^2
종합대학	23	1	4.3	1.12
단과대학	33	4	12.1	
전문대학	64	5	7.8	
계	120	10	8.3	

〈표 27〉 안식년 제도 있음(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안식년 실시 학교수(B)	%(B/A)	χ^2
국립	34	1	2.9	1.99
사립	84	9	10.7	

〈표 28〉 생필품 공동 구판장 운영(유형별)

**p<.01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운영 학 교수(B)	%(B/A)	χ^2
종합대학	23	7	30.4	10.89**
단과대학	33	4	12.1	
전문대학	64	3	4.7	
계	120	14	11.7	

〈표 29〉 생필품 공동 구판장 운영(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운영 학 교수(B)	%(B/A)	χ^2
국립	34	7	20.6	3.64
사립	84	7	8.3	

〈표 30〉 통근 버스 운행(유형별)

**p<.01

종류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운영 학 교수(B)	%(B/A)	χ^2
종합대학	23	21	91.3	11.09**
단과대학	33	30	90.9	
전문대학	64	41	65.6	
계	120	93	77.5	

〈표 31〉 통근 버스 운행(설립별)

설립별	조사 대상 학교수(A)	운영 학 교수(B)	%(B/A)	χ^2
국립	34	31	91.2	5.16
사립	84	61	72.6	

〈표 32〉 본교 교수들은 대체로 직무 만족도가 높다(유형별)

종류별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χ^2
종합대학	15(65.2)	6(26.1)	2(8.7)	1.107
단과대학	20(60.6)	10(30.3)	3(9.1)	
전문대학	40(62.5)	21(32.8)	3(4.7)	
계	75(62.5)	37(30.8)	8(6.7)	

()안은 %

〈표 33〉 본교 교수들은 대체로 직무 만족도가 높다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χ^2
국립	27(79.4)	5(14.7)	2(5.9)	6.964
사립	47(56.0)	32(38.1)	5(6.0)	

()안은 %

單科大의 경우는 실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요즘은 公務員을 위한 共同購販場이나 私學年金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共同購販場이 곳곳에 있으므로 큰 필요성이나 불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通勤 버스가 없는 大學이 더러 있고, 특히 專門大學의 경우는 23%에 이르고 있음도 문제가 있다.

4) 教授들이 바라는 改善課題

“대학 교수의 복지 후생 문제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라는 自由反應式 문항에 대해서 제시된 의견들을 頻度數에 따라 차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 ① 研究補助費 支援 對象의 확대 및 지원금의 현실화(21 명)
- ② 教授會館建立(14 명)
- ③ 子女學資金補助(初等에서 大學까지)(12 명)
- ④ 住宅問題 해결(8 명)
- ⑤ 安息年 制度 실시(6 명)
- ⑥ 處遇改善(6 명)

이 밖에도 正常的인 號俸調整(4 명), 通勤 버스 運行(3 명)을 비롯하여, 學位取得課程에 대한 學費補助, 研究室 확보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3. 教授福祉上的 問題點

지금까지 소개된 教授福祉 實態를 요약 정리 하면서 問題點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施設·環境面에서 教授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教授活動과 研究活動에 精進할 여건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教授研究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교가 32%나 되며, 教授會館이 있는 大學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校內施設物 活用の 便宜性에 대해서도 不滿을 드러내는 비율이 20%이며, 教具·教材·資料活用の 便宜性에 대해서도 32%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은 大學教育의 質的 秀越性 保障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인 報酬에 대해서는 비교적 不滿이 크지 않은 편(19%)이나 學問的 성장을 위한 研究活動費 支援體制가 미흡하여 研究活動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生活費로 충당된다. 현실적인 대학 교수의 보수 수준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는 별로 부족을 느끼지 않으나, 教授에게는 생명과 같은 研究活動에 필요한 돈을 따로 염출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研究費補助 制度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受惠 범위가 좁고 금액이 충분치 못하다. 이는 自由反應式 設問 結果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外形的인 福祉實態에 비해 教授들의 職務滿足度는 낮은 편이다(전체의 31%가 불만).

이는 말하자면 經濟的 측면이나 施設環境의 측면보다 安息年 制度, 教授·研究活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에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4. 教授福祉의 改善方向

福祉가 단순히 生産性 向上을 위한 수단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基本權 보장이란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음은 앞서서도 밝힌 바 있다. 組織員들의 福祉를 증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며, 즐겁고 보람된 職場生活을 누리도록 돕는 일은 經營者의 당연한 義務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福祉의 概念은 職場生活의 質(quality of work life; QWL)이라는 概念으로 확대 해석되고, 外的·物質的인 작업 조건의 改善과 더불어, 인간 내면의 희열과 보람을 일 자체를 통해서 느끼고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Walton은 QWL을 보장하는 8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

- ①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adequate and fair compensation)
 - 보수가 사회적 기준이나 개인적(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가?
 - 보수가 다른 직종에서의 보수 수준과 적절성을 유지하는가?
- ②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safe and healthy environment)
 - 작업 시간은 적당한가?
 - 물리적 환경은 질병이나 상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공기, 냉난방, 색깔, 소음, 채광 등)을 유지하는가?
- ③ 인간 능력의 개발(development of human capacities)
 -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업무인가?
 - 자율성은 적절히 보장되는가?
 - 참여 기회는 많은가?

4) Richard E. Walton,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 life", Harvard Business Review 47(Reprint Series), pp. 58~59.

④ 성장과 안정(growth and security)

- 새로운 기술 습득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가?
- 신분은 보장되고 있는가?
- 개인적 발전 또는 승진의 기회는 보장되는가?

⑤ 사회적 통합성(social integration)

- 평등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 자아 정체 의식과 자아 존중 의식이 충만한가?
- 동료간에 원만한 인간 관계가 유지되는가?

⑥ 헌법성(constitutionalism)

- 조직원들의 권익은 옹호되고 있는가?
-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 합리적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

⑦ 전체 생활 공간(the total life space)

- 개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가 적절한가?
(여가를 즐기고, 진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

⑧ 사회적 관계(social relevance)

- 업무가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상의 관점에서 대학 敎授들이 QWL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학 敎授福祉의 改善方向을 논해 보기로 한다.

1) 先決課題(短期課題)

(1) 안락하고 쾌적한 研究室의 확보

냉난방, 조명, 환기, 소음, 위생 등에서 완벽하고, 한번 배정되면 補職에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옮기지 않아도 되는 1敎授 1 研究室 체제의 확립은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이다.

(2) 身分保障

한마디로 時局宜움을 했다고 再任用에서 탈락되거나 財團의 눈에 거슬린다고 쫓아내는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3) 適正報酬體系의 확립

가정을 지키고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인된 생계 표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표준에도 합당하고 다른 직종과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發展課題(長期課題)

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항목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安息年 制度의 시행—매 5년마다 1년

② 研究費 受惠 對象과 범위 확대 및 금액의 현실화

③ 敎授負擔 減少化—週當 9시간 담당 및 受講對象人員 40명 이하 유지

④ 敎授協議會 機能의 活性化

⑤ 停年延長—70세까지

*